



한·미 FTA 농업분야 결과

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협상 종결됐다.
 여덟 차례 협상,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을 논의했고,
 3.26~4.2일 새벽까지 열린 장관급협상에서 최종 타결됐다.
 농림부는 17개 분과, 2개 작업반 중 농업과 위생·검역(SPS) 분과 협상을 주관하고,
 원산지·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도 참여했다. 본지는 이번 최종 타결된 결과를
 요약하여 게재한다. (편집자주)

◆ 육류

품목명	협상결과
쇠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감한 6개 세번(40%) : 15년 철폐, 동 기간 중 ASF 적용 * 도체와 이분도체(냉장 및 냉동), 부분육(냉장 및 냉동) - ASG 발동물량 : 270천톤(1년차) → 354천톤(15년차, 매년 6천톤 증량) - ASG 발동세율 : (1~5년차까지) 실행세율을 적용 → (6~10년차) 실행세율의 75% → (11~15년차) 실행세율의 60% ○ 육우(40%)와 식용설육(족·꼬리 등)(18%), 쇠고기 가공품(72%) 등 : 15년 철폐
돼지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감한 2개 세번(22.5%) : 10년 철폐, 동 기간 중 ASG 적용 * 냉장 삼겹살과 기타(갈비·목살 등) - ASG 발동물량 : 8,250톤(1년차) → 13,938톤(10년차, 6% 증량) - ASG 발동세율 : (1~5년차까지) 실행세율 적용, (6~10년차) 실행세율의 70%에서 50%까지 인하(매년 5%씩 감축) ○ 냉장육(도체와 이분도체, 전·후지)(22.5%), 냉동육(25%), 식용설육(18~30%), 돼지고기 가공품(27~30%) : 2014.1.1 철폐(7년 철폐와 유사) ○ 소시지(18%) : 5년 철폐
닭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닭(18~20%), 냉동(가슴살, 날개)(20%) : 12년 철폐 ○ 냉장육(18%), 냉동(다리, 기타 절단육)(20%), 닭고기 가공품(30%) : 10년 철폐
계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란(41.6/TRQ 30%), 전란액(27%) : 15년 철폐 ○ 난황(27%) : 12년 철폐 ○ 종란(27%) : 10년 철폐 ○ 난백(8%) : 5년 철폐
기타육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리고기(18~22.5%) : 냉장육 10년 철폐, 냉동육 12년 철폐 ○ 산양·면양고기(22.5%) : 10년 철폐 ○ 칠면조고기(18%) : 7년 철폐 ○ 녹용·녹각(20%) : 15년 철폐



◆ 낙농품, 꿀, 사료

품목명	협상결과
분유 연유 유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탈지분유·전지분유(176/TRQ 20~40%)·연유(89/TRQ 40%) : 현행관세 - 무관세쿼타 제공 5천톤(매년 3% 증량) ○ 혼합분유(36%) : 10년 철폐 ○ 조제분유(36~40%) : 10년 철폐 - 무관세쿼타 제공 700톤(매년 3% 증량) ○ 유당(49.5/TRQ 20%) : 5년 철폐
치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다치즈(36%) : 10년 철폐 ○ 체다 이외의 치즈(36%) : 15년 철폐 ○ 치즈 무관세쿼타 7천톤 제공(매년 3% 증량)
밀크와 크림 (36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~15년 철폐 - 지방함량 60% 이하 : 15년 철폐 - 기타 지방함량 60% 초과 : 12년 철폐 - 냉동크림 지방함량 60% 초과 : 10년 철폐
버터(89%, TRQ 4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년 철폐 - 무관세쿼타 200톤(매년 3% 증량)
유장 (49.5%, TRQ 2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용 : 20%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- 무관세쿼타 3천톤(매년 3% 증량) ○ 사료용 : 즉시 철폐
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천연꿀(243%/TRQ 20%) : 현행관세, 무관세쿼타 200톤(매년 3% 증량) ○ 인조꿀(243%/TRQ 20%), 로얄제리(8%), 벌꿀조제품(8%) : 10년 철폐
사료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료용 근채류(100.5%/할당 2%) : 15년 철폐 - 무관세쿼타 20만톤(증량없음) ○ 보조사료(50.6/TRQ 5%) : 12년 철폐 - 무관세쿼타 5,500톤(매년 3% 증량) ○ 사료용 옥수수(할당 0%), 대두(채유 및 박용)(할당 1%) : 즉시 철폐